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1
----------	-----

### □ 제안이유

- 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삭제로 민원인 편의제공 등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제명변경(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 · 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 법령 용어 · 정비 및 규제완화 (면제할 수 있다 → 면제한다)
- 민원인의 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 조항 삭제

### □ 첨 부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

### 개정조례(안)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 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중 “시험조사”를 “시험·조사”로 한다.

제5조중 “별표1에 의거”를 “별표1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중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부공문서 규정”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령”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15일”을 “10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표